

2021 제1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영국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독일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외국법제동향

- 독일 민법상 중개수수료 규정 관련 최신 동향
- 중국 수출규제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캐나다 아동학대 방지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체계 및 주요 내용

2021 제1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중국 수출규제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손한기 | 남경항공향천대학 인문사회과학학부 법학과 부교수

## I. 들어가며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수출 등 경제·통상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었거나 또는 시행된 주요 법제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2019년 3월 15일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sup>1</sup>
-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2020년 8월 25일자로 기존 목록 수정(개정) 후 발표<sup>2</sup>(상무부와 과학기술부)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2020년 9월 19일 발표 및 시행<sup>3</sup>(상무부)
-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2020년 10월 17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시행
-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2020년 12월 19일 제정·공포, 2021년 1월 18일 시행<sup>4</sup>(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 1 이 법은 기존 '외자3법'이라 불렀던 「외국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기존 외자3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 2 중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29조제2항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국무원 유관 부처와 함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술목록을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을 몇 차례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 3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은 외국기업, 외국조직 또는 외국인이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시장거래원칙에 위반하여, 중국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중국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외국 기업 등을 ‘신뢰할 수 없는 명단(entity list)’에 포함시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제2조). 제재의 종류에는 “①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② 중국 국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③ 관련 인원, 교통운수 도구 등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④ 관련 업무 인원의 중국 내 업무허가, 체류 또는 거류 자격 제한 또는 취소, ⑤ 정황의 경중에 근거하여 상응한 과징금 부과, ⑥ 기타 필요한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조).
- 4 「외국인투자법」 제35조제1항은 “국가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제도를 마련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안전 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이 제정되었다.

2021년 1월 9일 공포 및 시행<sup>5</sup>(상무부)

- 「희토류 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안)(稀土管理条例(征求意见稿)), 2021년 1월 15-2월 15일 의견수렴 실시(공업정보화부)

중국의 상기 법제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② (전략물자 등의) 해외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③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외국 정부의 (부당한) 법률 및 조치에 대한 대등한 보복조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대외 수출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로 미중무역전쟁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둘째로 희토류와 무인기·인공지능·드론 기술 등 전략자원과 핵심 기술 보호이다.

이하에서는 위의 내용 중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각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수출규제관련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의 입법 배경, 체계와 구성,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국 「수출통제법」의 제정 배경과 체계

### 1. 제정배경 및 의의

「수출통제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중산(钟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6</sup>

“수출통제란 한 국가가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안전과 발전이익 등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생물·무기 등 특정 품목에 대하여 채택한 금지 또는 제한적 조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규율하기 위하여 각국은 보편적으로 수출통제법률제도의 마련 및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중국)는 「통제화학품관리조례」(监控化学品管理条例), 「핵수출통제조례」(核出口管制条例), 「군수품수출관리조례」(军品出口管理条例), 「핵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 기술

5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국민·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 방법은 외국법률과 조치의 역외 적용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 등이 제3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없는 등 중국 기업 등의 교역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2조). 중국 상무부 등 주무 부처는 외국법률 또는 조치가 부당하게 역외 적용되어 중국 기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조치의 승인금지·집행금지·준수 금지 등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7조). 또한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 등은 중국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으며(제9조), 중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한 외국정부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

6 全国人大网, 关于《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草案)》的说明.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0/fb877d7e54814c6b91845f2b4dded83b.shtml>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14일)

수출관리조례」(核两用品及相关技术出口管制条例), 「미사일과 관련 품목 및 기술 수출통제조례」(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 「생물 이중용도품목과 관련 설비 및 기술 수출통제조례」(生物两用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条例) 등 6개 수출통제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제정해서, 핵·생물·화학·미사일 및 군수품 품목을 포괄하는 수출통제 법률제도·체계를 마련했는데 이는 수출통제 강화, 국제의무의 적극적 이행, 국가안전의 수호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입법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수출통제업무의 통합적 협조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통제 품목의 범위 및 통제조치가 기타 국가와 완전히 대등 및 균등하지 못하며,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에 반드시 형세의 변화에 근거하고, 현행 6개 행정법규의 실시경험을 종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출통제 정책, 통제리스트, 통제조치 및 관리감독 등 방면의 기본제도의 구조와 규칙을 통일적으로 확립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수출통제 법률제도를 더욱 개선시키고, 새로운 시기 수출통제 업무를 더욱 잘 실행하기 위한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의 중국 수출통제 법제의 체계는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규장 등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률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이외에 「세관법」과 「형법」 등 일부 법률이 수출통제 품목의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통제화학품관리조례」 등 6개의 수출통제 관련 행정법규와 유관 규범성문건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령은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법령 간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했으며, 유관 법령들 간의 모순 및 충돌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집행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수출통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제가 마련된 셈이며, 기존 법령 또한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출통제법」은 모든 물자의 수출규제와 관계되는 법이 아니라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과 이익’ 보호라는 목적으로 화물, 기술, 서비스 등 모든 유·무형의 무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능 중의 하나인 ‘국가핵심기술’<sup>7</sup>의 보호도 함께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그동안 중국 대외무역관계의 기본법이었던 「대외무역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대외무역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도 수출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법이 규정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

표1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입법 경과

시기	경과
2017년 6월 17일	상무부, 「수출통제법」(초안 및 의견수렴안) 발표
2019년 12월 23일	중국 상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출통제법」 심의 요청
2019년 12월 18일	「수출통제법」(초안) 의견수렴
2020년 6월 28일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수출통제법」(초안) 1차 수정 후 발표
2020년 7월 3일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수출통제법」(초안) 심의결과 발표 및 2차 수정
2020년 10월 16일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수출통제법」(초안3차심의안) 보고 및 수정
2020년 10월 17일	「수출통제법」 공포
2020년 12월 1일	「수출통제법」 시행

출처: 연구자 재구성

## 2. 「수출통제법」의 체계와 구성

중국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전면통제(캐치올 통제<sup>9</sup>),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2 중국 「수출통제법」의 체계

명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입법목적: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정의 규정: 통제품목에는 품목과 관련된 기술자료(데이터) 포함. 수출통제의 개념, 이중용도 품목의 개념, 군수품의 개념, 핵의 개념 정의. 수출통제의 기본원칙: 총체적 국가안전관 건지 및 국제평화 수호, 안전과 발전에 대한 통합적 고려, 수출 통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통일적 수출통제제도 실행: 통제리스트, 명부 또는 목록 제정, 수출허가실시제 등을 통해 관리. 주무 부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제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통제조치 (제8조-제27조)	제1절 일반규정 수출통제관리부처의 권한과 직책: - 수출통제 정책 제정, 중요한 정책은 국무원 혹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동시에 받아야 함.
제1절 일반규정	-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제정해서 적시에 공포.

아가 신법우선의 원칙 혹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두 법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수출통제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9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이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v.kr>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8일)

명칭	주요 내용
제2절 이종용도 품목의 수출관리 제3절 군수품 수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통제 리스트 이외의 품목과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2년 이내의 기한 동안 임시조치 가능.</li> <li>-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 실시.</li> </ul> 수출자에 대한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로 하여금 국가수출주무부처에 통제품목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제출 의무화.</li> <li>- 통제품목 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련 위험관리제도 마련.</li> <li>- 수입자와 최종사용자가 법에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통제리스트 마련하여 관리 및 제재.</li> </ul> 제2절 수출자의 자료 제출의무 및 수출허가증 발급. 제3절 군수품 수출은 정부지정업체만 가능. 중대 군수품의 수출 관련 업무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 필수
제3장 관리·감독 (제28조-제32조)	국가수출통제부처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 명시: 현장검사·설명요구·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복제·압류 및 은행계좌 조회 등.
제4장 법적 책임 (제33조-제44조)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벌금, 몰수, 수출허가업무 금지 등.</li> <li>- 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 형사처벌.</li> <li>- 외국의 조직과 외국인도 처벌 가능.</li> </ul>
제5장 부칙 (제45조-제49조)	중국을 경유하여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 외국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할 경우 대등한 보복조치.

자료: 연구자 재구성

### III.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 1. 적용 범위

「수출통제법」에서 통제하는 물품의 품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이종용도품목<sup>10</sup>, 군수품<sup>11</sup>, 핵<sup>12</sup> ②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의 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품목(화물, 기술, 서비스 등이 포함)’이 그것이다.<sup>13</sup> 여기에는 통제품목과 관련된 기술자료 데이터도 역시 포함된다.<sup>14</sup>

10 이종용도품목은 민간용도뿐만 아니라 군사용도 또는 군사잠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의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화물·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수출통제법」 제2조제4항)

11 군수품은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장비, 전용생산설비 및 관련 화물·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수출통제법」 제2조제5항)

12 핵은 핵재료, 핵설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수출통제법」 제2조제6항)

13 최서지, 중국의 국제수출통제제도 이행과 시사점 -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제43집, 제123면 각주28은 “제2조에서는 ①과 ② 및 ③의 품목 전체를 일컬어 ‘관리통제품목’(管制物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과 기술”(대외무역법 제19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리통제품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한 이종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이 해당되는데, 무기제조와 관련 없이 일반 산업현장에

통제의 대상인 '수출(出口)'의 경우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는데, 간주수출, 재수출, 특수수출도 포함된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중국 국내에서 해외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경우(직접수출)
- ② 중국의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중국 내의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경우<sup>15</sup>(간주수출)
- ③ 통제품목의 경우·환적·운송·재수출<sup>16</sup>(경유 및 재수출)
- ④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역 및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관리·감독 장소에서 해외로의 수출<sup>17</sup>(특수수출)

## 2. 통제의 주체와 대상

「수출통제법」 제5조제1항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수출통제직능을 담당하는 부처(이하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직책 분업에 근거하여 수출통제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유관 부처는 직책분업에 근거하여 수출통제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의 여러 부서가 수출통제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법의 초안을 상무부가 주도적으로 제정했고 또한 수출에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상무부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8</sup>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과 외국조직 및 개인이다. 따라서

서 널리 쓰이는 밸브, 펌프, 네트워크장비, 공작기계 등 다양한 수출품목도 그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등을 수출하기 전에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 후 해당될 경우 관할부처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중국의 수출통제품목에 해당하는 물자, 기술 서비스는 우리의 ‘전략물자’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통상용어 사전] 전략물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420295&memberNo=387676>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15일)

- 14 「수출통제법」 제2조 ①국가는 이중용도품목, 군수품, 핵 및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의 수호, 비확산 등 국제의무와 관련된 화물, 기술, 서비스 등 품목(이하 통제품목)의 수출통제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통제 품목에는 품목과 관련된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한다.
- 15 「수출통제법」 제2조제3항: “이 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외국으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것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인·비법인조직이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16 「수출통제법」 제45조.
- 17 「수출통제법」 제45조.
- 18 “현재 중국의 수출통제 주무기관은 무역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产业安全与进出口管制局)을 중심으로,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소속의 국가 국방 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 해관총서(海关总署), 외교부, 국가원자력기구(国家原子能机构), 공안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국가외환관리국 등 다수의 부서가 관여하고 있다. 수출통제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부서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법」(초안)은 이를 특정 기관이나 부서로 지정하지 않고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로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 제6권 3호, 제30면.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역외적용). 특히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수출자, 수출통제에 위반한 행위를 위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자, 수입자, 최종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 3. 통제 수단<sup>19</sup>

#### (1) 통제품목 목록

현재 중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핵 수출통제 목록」, 「군수품수출 통제목록」 등을 제정해서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 및 이익 수호에 근거해서 「수출통제법」과 관련한 통제목록 리스트를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이다.<sup>20</sup>

#### (2) 임시통제

국가수출통제관리부처는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수출통제 목록 이외의 화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임시통제를 할 수 있다.<sup>21</sup>

#### (3) 수출금지

「수출통제법」은 상술한 통제 품목 목록, 임시통제 이외에도 수출금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국가안전 및 이익,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유관 통제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캐치올 규제’<sup>22</sup>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수출허가

통제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통제품목의 수출에 종사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관리부처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sup>23</sup>, 또한 세관에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19 「수출통제법」 제4조는 “국가는 통일된 수출관리제도를 실시하며, 통제리스트, 명부 또는 목록(이하 ‘통제리스트’) 제정, 수출허가 실시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20 「수출통제법」 제9조제1항은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이 법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수출통제정책에 근거하여 규정된 절차와 따라 유관 부처와 함께 통제품목 수출통제목록을 제정·조정하여 적시에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수출통제법」 제9조.

22 「수출통제법」 제10조.

23 「수출통제법」 제13조는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국가 안전과 이익, ② 국제의무와 대외 약속, ③ 수출유형, ④ 통제품목의 민감정도, ⑤ 수출 목적지(국가/지역), ⑥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⑦ 수출자의 신용기록, ⑧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사항.”

목록이 열거한 통제품목 및 임시통제품목 이외의 화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도 수출자가 알거나 또는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또는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의 통지를 받아, 해당 화물, 기술 및 서비스가 ①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주는 경우 ② 대량살상용 무기 또는 그 운반도구의 설계·개발·생산에 이용되거나 또는 사용되는 경우 ③ 테러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sup>24</sup>

#### (5)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위험관리 및 통제명단제도

「수출통제법」은 또한 통제품목의 최종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통제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평가·조사를 실시하며, 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출통제관리부처가 수입자, 최종사용자를 통제명단에 포함시켜 관리 및 제재한다.<sup>25</sup>

-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관리에 관한 요구에 위반한 경우
-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통제품목을 테러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6) 대등한 보복조치

「수출통제법」 제48조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해당 조항은 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보복을 명시한 조항이며, 대외무역 관련 보복조치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있겠다.

## 4. 법적 책임

### (1) 행정처벌

「수출통제법」에서 법률 위반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을 제33조 내지 제43에서 매우 상세히 나아가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처벌의 유형에는 경고,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소득몰수, 벌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 수출자격 취소, 수출업 무중사 금지, 신용징계명단에 포함 되는 것 등의 조치가 있다.

24 「수출통제법」 제12조, 제19조.

25 「수출통제법」 제17조, 제18조.

표3 수출규제법상 행정처벌

규정	내용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없이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위법행위 중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li> <li>- 위법소득 50만 위안 이상, 위법경영액의 5-10배 과태료 병과.</li> <li>-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미만, 50-500만 위안의 과태료 병과.</li> </ul> </li> </ul>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없이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허가증이 규정한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이 금지된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의 처벌: 제33조와 동일.</li> </ul>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뇌물 등 수단을 통하여 수출허가증을 취득 또는 불법 양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허가증 박탈 및 위법소득 몰수.</li> <li>-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이상, 5-10배의 과태료 병과.</li> <li>-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또는 20만 미만, 20-200만 위안의 과태료 병과.</li> </ul> </li> <li>• 통제품목 수출허가증을 위조·변조·매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소득 몰수.</li> <li>- 위법경영액 5만 위안 이상, 5-10배 이하의 과태료 병과.</li> <li>-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 5-50만 위안의 과태료 병과.</li> </ul> </li> </ul>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가 수출통제 위법행위를 하는 줄 명확히 알고서도 그에게 대리·화물수송·우편배송·통관·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 위법소득몰수.</li> <li>- 위법경영액 10만 위안 이상, 위법경영액의 3-5배 이하의 과태료 병과.</li> <li>-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 10-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li> </ul> </li> </ul>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명단에 포함된 수입자, 최종 사용자와 거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li> <li>-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 위법경영액의 10-20배 과태료 병과.</li> <li>-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 50-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병과.</li> <li>-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개선명령 및 통제품목 수출경영자격 박탈.</li> </ul> </li> </ul>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가 감독·검사를 거절 또는 방해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및 10-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li> <li>-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개선명령 및 통제품목 수출자격 박탈.</li> </ul> </li> </ul>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에 위반해 처벌을 받은 수출자에 대하여 처벌의 효력발생 시로부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수출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수출업무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출통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평생 수출업무에 중사 불가.</li> <li>• 국가수출통제관리부처는 수출자가 이 법에 위반한 상황을 신용기록에 등록하여 제재.</li> </ul>
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수출통제관리부처의 허가불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신청가능. 행정심판의 재결은 최종적 효력을 가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 없음)</li> </ul>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의 수출통제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가한 경우, 이 법 규정의 처벌 이외에도,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차 처리 및 처벌됨.</li> </ul>

출처: 연구자 재구성

## (2) 형사처벌

「수출통제법」 제43조제2항은 수출이 금지된 통제품목 또는 허가가 필요한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는 경우, 앞서 본 행정처벌 외에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상의 죄목들을 살펴본다면, 「수출통제법」 위반 시 중국 「형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파괴죄」 제2절의 「밀수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sup>26</sup>

### (3) 역외적용

「수출통제법」 제44조에서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이 이 법률이 규정한 수출통제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침해하거나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위반한 외국인과 외국기업 등에게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 IV. 나가며

중국 정부는 최근 전략물자와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대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향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현재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출통제법」을 적용하여 보복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동법만으로는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향후 하위법령인 「수출통제법 실시조례」(행정법규)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중앙부처의 규정이 발표되어야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해당기업들이 수출입하는 물품·서비스·기술 등이 동법의 적용대상인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sup>27</sup>, 중국진출기업 외에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 등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6 그중 제151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제151조제1항은 '무기와 탄약 밀수죄', '핵재료 밀수', '위조지폐 밀수죄' 3가지 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무기, 탄약, 핵재료 또는 위조지폐를 밀수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한다. 정황이 가벼운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문물밀수죄', '귀중한 금속 밀수죄', '희귀한 동물 및 동물제품 밀수죄'인데, 그 중 '귀중한 금속밀수죄'의 경우 희토류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매우 중요하다. 희토류 등 귀중한 금속을 밀수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한다. 정황이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화물, 물품을 밀수한 죄'이다. 그 내용은 "희귀 식물 및 기타 제품 등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기타 화물, 물품을 밀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항은 "단위(법인 등)가 상술한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 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7 즉 「수출통제법」은 '2차 제재'라고 불리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인식,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 제6권 3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네이버 포스트 「통상용어 사전」 전략물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420295&memberNo=387676>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kr/>
- 최서지, “중국의 국제수출통제제도 이행과 시사점 -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제43집. 2020.
- 姜辉, 我国出口管制体系的演进历程及完善对策, 2019年 8月.
- 刘新宇, 景云峰, 出口管制法对企业提出的合规化要求, 中国海关, 2020年 第10期.
- 韩爽, 中国企业出口管制合规建设与要点分析企业经济, 2020年 第7期.
-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解读《出口管制法》, [www.ccpit.org/Contents/Channel\\_4251/2020/1030/1303019/content\\_1303019.htm](http://www.ccpit.org/Contents/Channel_4251/2020/1030/1303019/content_1303019.htm)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国贸易救济信息网, [cacs.mofcom.gov.cn/article/ffwpt/jyjdy/zjdy/202011/166856.html](http://cacs.mofcom.gov.cn/article/ffwpt/jyjdy/zjdy/202011/166856.html)
- 全国人大网, 关于《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草案)》的说明.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0/fb877d7e54814c6b91845f2b4dded83b.shtml>

# KLRI

##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http://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http://www.klri.re.kr)

###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